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98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자(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이○신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25번길 61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김○민	경상북도 경산시 백양로 181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임○석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5길 26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